

# 검 토 보 고

1997. 7. 16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## 2. 제안및회부일자

○ 제 안 : 1997년 7월 3일 제출

○ 회 부 : 1997년 7월 3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장학생의 선발은
- 당해학교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(중학생은 지역교육장)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중복 심의기능을 배제하고,
- 당해학교로 선발권한을 위임하고 특별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

#### 4. 주요골자

- 학교장이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선정하는 것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함 (안 제4조)
- 탈락자 발생시 승계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하는 것을 자체에서 승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)
- 장학생 추천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함 (안 별지)

##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중·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-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선정하던 특별장학생 선정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를 배제하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